

#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40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9. 19.

발의자 : 이명수 · 金炳旭 · 김상훈  
김희곤 · 박성민 · 이달곤  
이태규 · 최승재 · 태영호  
홍문표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외교적 노력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권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.

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에 가족을 두고 단신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사할린 현지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, 국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영주권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경우도 직계비속 1명으로 제한을 두어 형제·자매간 떨어져 지내야 하고, 사할린동포가 사망하게 되면 생활 지원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, 이들의 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할린동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

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3호,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2 신설 등).

##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정착”을 “정착 및 생활안정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”를 “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국내유족”이란 사할린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.

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 중 “동반가족”을 “동반가족 및 국내유족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실태조사) 정부는 사할린동포과 그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

제5조의 제목 중 “영주귀국 및 정착”을 “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할린동포”를 “사할

린동포와 그 동반가족”으로, “정착”을 “정착과 생활안정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영주귀국 및 정착”을 “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동반가족”을 “국내유족”으로, “제1항”을 “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중 “영주귀국 및 정착”을 “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제5조”를 “제5조제1항”으로, “정착”을 “정착과 생활안정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”를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여부”로 한다.

② 사할린동포의 국내유족으로서 제5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내유족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정부로부터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은 국내유족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일제강점기 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, 사 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 주국과 <u>정착</u> 을 지원함을 목 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정착 및 생활안정</u>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국내</u> <u>영주를 목적으로 사할린동포</u> <u>와 함께 귀국하는 사할린동포</u> <u>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</u> --- -----.
<u>&lt;신 설&gt;</u>	3. “ <u>국내유족</u> ”이란 사할린에서 <u>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</u> <u>주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.</u>
제3조(국가의 책무) ① (생 약)	제3조(국가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② · ③ (생 략)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<신 설>

제5조(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)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~ 3. (생 략)

4. 그 밖에 영주귀국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

② 국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· 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-----  
-----동반가족 및 국내  
내유족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  
-----.

제4조의2(실태조사) 정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

제5조(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) ① -----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-----  
---정착과 생활안정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-----

로 정하는 사항

②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등) 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결

② -----국내유족-----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-----  
-----.

제6조(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제5조 제1항-----정착과 생활안정-----  
-----  
-----.

② 사할린동포의 국내유족으로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-----제1항 및 제2항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지원

정기준과 심사 방법·절차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	<u>여부</u> ----- ----- -----.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